

교무위원회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1. 3. 4		16		
2	2013. 12. 23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교무위원회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한다)의 교육, 학술연구 및 학교 발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무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이사장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본 대학교 교직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.<개정 2013.12.23.>

② 위원회의 위원 중 부총장, 대학원장, 학장 및 행정처장은 당연직으로 하며, 전임교수를 임명직으로 할 수 있다.<개정 2013.12.23.>

③ 삭제<2013.12.23.>

제3조 (위원장 등)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 (직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11.3.4>

1. 학교발전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
2. 교육 및 학술연구 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본 조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4. 학사운영 및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
5. 교수회에 부의할 주요사항
6. 기타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

제5조 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③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에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.

제6조 (의결) 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관하여서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 (분과 위원회) ① 제4조 각호의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전항의 각분과 위원회는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분과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분과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분과위원장이 지정하는 분과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위원회에 제출한다.

제8조 (회의주관) ① 위원회는 교무처에서 주관한다.

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교무팀장으로 보한다.<개정 2009.6.1>

제9조 (수당)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 (준용)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72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73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7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85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6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7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8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9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